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85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, 예치금 금액이 조정되어 2025년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13,363백만원에서 20,916백만원으로 7,553백만원 증가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예치」 금액도 6,753백만원에서 14,306백만원으로 7,553백만원 증가하였음
- 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21,034	28,587	7,553
공공예금이자수입	557	557	-
민간융자금회수수입	7,034	7,034	-
기타회계전입금	0	0	-
기타그외수입	80	80	-
예치금 회수	13,363	20,916	7,553

<지출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21,034	28,587	7,553
비용자성 사업	8,631	8,631	-
융자성 사업	5,650	5,650	-
여유자금예치	6,753	14,306	7,553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택실 주택정책과 김소영 (☎2133-7985)